
Policy and Law Report _Vol.16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26.~2023.1.1) -

January 2,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법무법인 세종, 2022년 국회-대관 분야 베스트 로펌 2위 선정 !! - 백대용 변호사는 국회-대관 분야 베스트 변호사상 수상

법무법인(유) 세종의 입법전략자문팀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한경비즈니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국회/대관 분야 베스트 로펌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세종의 입법전략자문팀을 이끌고 있는 백대용 변호사는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국회-대관 분야 베스트 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종의 입법전략자문팀은 대한민국 로펌 중 유일한 실무자 중심의 국회-대관 업무 전문팀으로서, 기존의 명망가 및 고위관료 출신 인재와 함께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되어 고객들의 다양한 법적·정책적 수요를 종합적·전략적·실용적으로 처리하는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의 입법전략자문팀은 국회-대관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국회자문로펌에 선정되어 국회의 운영 및 사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입법전략자문팀으로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p>•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p> <p>정부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함</p> <p>이번 방안은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동력인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임</p> <p>*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기초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2022.9.21.)</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화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에서 정부, 시장 참여자,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청사진 제시 ②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 육성 ③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 추진 <p>*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p> <p style="text-align: center;">< 디지털플랫폼 신질서체계 및 추진전략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혁신과 글로벌’</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자율과 공정’</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신뢰와 포용’</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1 혁신·도전 보장 신생 플랫폼이 지속 유입되는 역동적인 산업</p> <p>2 글로벌 지향 지리적 한계가 없는 시장에서 세계를 향한 도전</p> <p>3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안전한 활용</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4 자율규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규범 체계로서 자율규제 우선</p> <p>5 공정경쟁 플랫폼간,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한 경쟁 환경</p> <p>6 기술투명성 투명하고 중립적인 알고리즘 운영</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7 안전환경 디지털 위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p> <p>8 이용자보호 이용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 환경</p> <p>9 포용연대 국민·소상공인·종사자 모두 함께 누리는 플랫폼 사회</p>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 이행 전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I 세계로 뻗어가는 혁신과 역동의 플랫폼 산업 육성</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II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III 누구나 안심하고 다같이 누리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td> </tr> </table> </div>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p>1 혁신·도전 보장 신생 플랫폼이 지속 유입되는 역동적인 산업</p> <p>2 글로벌 지향 지리적 한계가 없는 시장에서 세계를 향한 도전</p> <p>3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안전한 활용</p>	<p>4 자율규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규범 체계로서 자율규제 우선</p> <p>5 공정경쟁 플랫폼간,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한 경쟁 환경</p> <p>6 기술투명성 투명하고 중립적인 알고리즘 운영</p>	<p>7 안전환경 디지털 위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p> <p>8 이용자보호 이용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 환경</p> <p>9 포용연대 국민·소상공인·종사자 모두 함께 누리는 플랫폼 사회</p>	I 세계로 뻗어가는 혁신과 역동의 플랫폼 산업 육성	II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	III 누구나 안심하고 다같이 누리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p>2022-12-29</p>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p>1 혁신·도전 보장 신생 플랫폼이 지속 유입되는 역동적인 산업</p> <p>2 글로벌 지향 지리적 한계가 없는 시장에서 세계를 향한 도전</p> <p>3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안전한 활용</p>	<p>4 자율규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규범 체계로서 자율규제 우선</p> <p>5 공정경쟁 플랫폼간,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한 경쟁 환경</p> <p>6 기술투명성 투명하고 중립적인 알고리즘 운영</p>	<p>7 안전환경 디지털 위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p> <p>8 이용자보호 이용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 환경</p> <p>9 포용연대 국민·소상공인·종사자 모두 함께 누리는 플랫폼 사회</p>									
I 세계로 뻗어가는 혁신과 역동의 플랫폼 산업 육성	II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	III 누구나 안심하고 다같이 누리는 플랫폼 이용환경 조성									

부처	내용	일시
공정거래위원회	<p>•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p> <p>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골판지가공업·파스너제조업) 원사업자의 제품 수령·검사지연, 부당 대금 감액 등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 및 권리 보호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정 ② (조선임가공업)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서 작업별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 기재항목을 추가 ③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의무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최근 관련 법 개정 사항 반영 (공통) ④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상이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공통) ⑤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만을 기재한 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 (공통) 	2022-12-29
금융위원회	<p>•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추진</p> <p>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IT환경과 새로운 보안 리스크에 금융회사 등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안 거버넌스 개선)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보안을 준수하고,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 개선 ② (보안규제 정비)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 전환 ③ (관리·감독 선진화) 금융보안 전문기관이 금융회사 등의 보안체계를 검증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 강화 	2022-12-27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p>•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p> <p>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외부감사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사인선임절차 설명 ② (주기적 지정 등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요건 및 변화된 감사인 지정사유를 사유별로 나누어 안내하고, 지정시기, 지정 대상기간, 지정절차 설명 ③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감사인의 등록요건·등록절차를 안내하고 감사인 등록효과 및 미등록 감사인의 감사제한 사항 설명 ④ (심사·감리제도) 감리 착수사유를 중심으로 감리절차를 안내하고, 감리결과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 설명 	2022-12-2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p>•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3.6.28. 시행, 다만 제 11조제2항제3호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p> <p>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p> <p>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여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함 (제2조) ②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가함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신설) ③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함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건설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입,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58조) 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2022-12-27
	<p>•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22.12.27. 시행, 다만 제14조의6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제5조2 및 제5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p> <p>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p>	2022-12-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지방자치단체가 대행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p> <p>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시설폐쇄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② 폐지, 고철 등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행계약 근거를 마련함 (제14조의6 신설) ③ 생활폐기물 대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 법상 벌칙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함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 신설) ④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등 관련 검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 (제59조제1항제5호 신설) 	
	<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 시행)</p> <p>폐기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합성수지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모든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기만 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p> <p>재활용 가치가 높아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제품군별로 연간 재활용의무량*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별로 재활용의무량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회수 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 단위비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 제15조의7, 제19조의2, 제22조 등)</p> <p>* 재활용의무량: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가 온도교환기기군, 디스플레이기기군 등의 제품군별로 재활용해야 하는 양</p>	2022-12-3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u>」(2022.12.27.시행) <p>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며, 현행법상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공동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하청"을 "하도급"으로 순화함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제11조제2항제3호, 제26조제4항)</p>	2022-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u>」(2022.12.27.시행) <p>벤처기업집적시설에의 입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벤처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제11조의9제2항에 제6호 신설, 제19조제4항)</p>	2022-12-27
금융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u>」(2022.12.27.시행) <p>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 주주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87조제2항제1호, 제176조의7제1항)</p> <p><small>*물적 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기업 분할 (「상법」 제530조의12)</small></p>	2022-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u>」(2023.1.1. 시행)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신(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에 맞춰 재무건전성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항목인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12-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책임준비금의 계상 방법 변경 등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은 보험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함 <p><small>*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가 간 보험회계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17호를 국내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2021. 6. 10. 공포, 2023. 1. 1. 시행)을 개정하였고, 국내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보험금 지급 불이행 등 재보험자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자산에서 그 추정액을 감액하도록 함 <p>②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방법 변경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을 대신하여 이익잉여금을 지급여력금액으로 합산하도록 하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에 필요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함 	2022-12-27
	<p>•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 시행)</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료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부과기준 중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부분은 종전의 방식과 같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하는 한편,</p> <p>예금자 등이 투자자예탁금과 보험금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그에게 예치되거나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공제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6조제3항, 제16조의4제3항, 제18조제6항 신설, 제21조 등)</p>	2022-12-27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법무부	<p>• 「민법 일부개정법률안」</p> <p>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 비디오 플랫폼 등 개인간 직접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명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p> <p>아울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산업, 광고·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등 기존 유명인들의 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p> <p>이에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와 그 보호수단을 기본법인 「민법」에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함 (안 제3조의3 제1항) <p>②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용 허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격표지영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의3 제2항) -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3 제3항 전단) -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격표지의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3 제3항 후단) <p>③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3 제4항) <p>④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함 (안 제3조의3 제5항) <p>⑤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격표지영리권자는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3 제6항) 	2022-12-2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의견 제시기간 : 12/26(월)~2023/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제출</p>	
산업통상 자원부	<p>•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안 제5조의5 9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p>※ 의견 제시기간 : 12/26(월)~2023/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제출</p>	2022-12-26
국토 교통부	<p>•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 <p>그간 단열·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준을 정비하고,</p> <p>「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풍력 발전시설의 건축물 옥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경제 규제혁신 TF, '22.7.28)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안 제86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2022-12-2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②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포함 (안 제118조제1항)</p> <p>③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6항)</p> <p>④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주요시공사 범위 명확화 (안 제17조)</p> <p>- 종합/전문공사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사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p> <p>⑤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확화 (안 제27조의2)</p> <p>- 공개공지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차량주차가 불가하나, 제한행위 유형에 차량주차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단속·처벌 등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편익 보장</p> <p>※ 의견 제시기간 :12/26(월)~2023/2/4(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 제출</p>	
	<p>•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 <p>신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 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안 제41조제1항, 별지 제30호 및 제30호의3서식 개정)</p> <p>②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2항 신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및 제8호의2서식 신설)</p> <p>③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대상 구체화 (안 제43조의2제8항)</p> <p>④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필수 전문인력을 확대 (안 제43조의2제5항)</p> <p>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함 (안 제38조의4 및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p>	2022-12-2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12/26(월)~2023/2/4(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고시) 개정안」</p> <p>「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협력시 ‘적극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경우만 감경 최고상한을 적용받도록 하여 이통사, 대리점 등 수범자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 (안 부과기준 [별표4] III. 제1호 개정) ③ 자율준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차등하여 감경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여 이통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안 부과기준 [별표4] III. 제5호 개정) ④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10%, 20%, 30% 이내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재발방지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신뢰성 확보 (안 부과기준 [별표4] III. 제6호 개정) <p>※ 의견 제시기간 : 12/28(수)~2023/1/1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단말기유통조사팀)로 제출</p>	2022-12-28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p> <p>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를 받은 이후 출자 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p> <p>다만,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만 출자하면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p> <p>2015년 3월 11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자요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14년 1월에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된 경우의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33% 이상으로 강화하였음</p> <p>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범위를 신용조회회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명확한 사유없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포함하는 ‘신용정보회사’ 전체에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음</p> <p>이후 2020년 2월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회사와 구분하여 정의하게 되었으나, 금융기관 등의 최소출자 비율 규정은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입법 불비로 인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오고 있는 실정임</p> <p>이러한 최소출자 비율 규정은 국민들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다량 보유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조사회사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p> <p>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특히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자유로운 주식 거래로 출자 지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없음</p> <p>이에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출자 비율에 관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4조제1항제2호)</p>	2022-12-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p> • 「탄소세 기본법안(기동민의원 등 15인)」 </p> <p> 현대사회에 이르러 산업발전, 에너지 사용 및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탄소발생이 급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상기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감축하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p> <p>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탄소세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현재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p> <p> 이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p> <p> 주요 내용으로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휘발유, 가스, 석탄, 그 밖에 화석원료 등이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 사용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그 물품을 탄소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당 5만원으로 함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과세물품에 대한 세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 세액의 조정 등의 사유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4항) ③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1단위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양(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과 물품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하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함 (안 제6조) ④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9조) ⑤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저유소에서 혼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과세시기 등의 특례를 규정함 (안 제10조) ⑥ 미납세 반출, 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등을 규정하여 탄소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⑦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으로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3항) ⑧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안 제21조) 	2022-12-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⑨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 및 검사,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p>	
	<p>•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영국 등에서는 전기·가스업체를 대상으로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법인에 대한 초과소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및 제55조의3 신설)</p>	2022-12-27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2인)」</p> <p>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p> <p>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21일 서울(여의도)와 부산(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고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p> <p>하지만 현행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어 서울(여의도)은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해외금융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p> <p>이는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됨</p>	2022-12-2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숫자는 금융중심지의 구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의 금융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임</p> <p>이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고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중심지구역 내(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p> <p>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구역 감면 기한(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해외금융기업의 이전은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여 유치 인센티브로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정된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명시하고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2023년 12월 31일까지)을 삭제함 (안 제121조의21)</p>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p> <p>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이용약관 신고 중인데, 통신장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p> <p>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 운영에 있어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p> <p>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p> <p>이에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안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의2 신설 등)</p>	<p>2022-12-26</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서는 스팸성 문자메시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인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방식으로 발송인을 금융기관 등으로 거짓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발신번호가 변작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문자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발송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거짓 표시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의2 등)</p>	2022-12-30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배포·게시한 광고·선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가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으로 게임물을 광고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게임물 허위·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현행법의 광고·선전의 제한규정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게임물의 경우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3항제4호의2 신설)</p>	2022-12-2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철규의원 등 10인)」</p> <p>전기는 경제성장, 국민 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p> <p>그러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여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p> <p>이에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법의 목적을 전기산업의 혁신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② 전기, 전기기술, 전기산업,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 ③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원칙을 마련함 (안 제3조) ④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 (안 제5조) ⑤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6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과 그 밖의 행정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안 제14조) 	<p>2022-12-28</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하도록 함 (안 제15조)</p> <p>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p> <p>•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p> <p>세계 서비스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을 육성할 필요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무역 육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통계가 필요함</p> <p>그러나,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서비스무역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p> <p>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물품의 수급위기 발생 등 수출입 제한·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 작성, 수출입 제한·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등)</p>	2022-12-28
	<p>•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지원대상을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금액을 결정할 때에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을 고려하도록 함</p> <p>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도록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는 기기·시설물·구조물 등을 안전하게 처리·격리하고 해당 발전소 부지의 잔여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해체를 완료하기까지 1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해체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이 법의 지원대상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p>	2022-12-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적인 근로 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일종의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p> <p>이에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등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2조의 2 신설)</p>	2022-12-27
	<p>•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 <p>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용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체불사업주가 용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을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p> <p>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3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호, 제17조, 제23조제1항제7호의2사목 및 아목 신설, 제23조제1항제7호의3 신설, 제23조의3 신설 등)</p>	2022-12-28
	<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p> <p>그런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다수의 법인 등을 이용해 제조·수입량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p>	2022-12-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나누어 등록·신고하거나 이들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등록·신고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탈법행위 등을 한 경우 등록·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등)</p>	
<p>국토교통 위원회</p>	<p>•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 원 등 12인)」</p> <p>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p> <p>그러나,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다수의 시·도에 걸친 자율주행 유상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p> <p>또한,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관리를 모색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명확화함 (안 제2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③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허가권자를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함 (안 제9조) 	<p>2022- 12-28</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p>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레저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행수요가 많은 도심 상당수의 지역이 주변에 위치한 국가중요시설, 공항, 군부대 등의 보안, 테러방지 등을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드론을 활용한 취미·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고, 도심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비행 또는 불법촬영 등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p> <p>이에,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촬영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 신설)</p>	2022-12-30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3(화)	「2022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발간	
미래연구원	1/2(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0호 발간 - ‘양극화’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별첨1] 제401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조특위	1/4(수) 10:00	전체회의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특위 1차 청문회
	1/6(금) 10:00	전체회의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특위 2차 청문회
과방위	1/5(목) 10:00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3(화) 10:00	윤석열 정부의 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정춘숙·강훈식·김민석 의원실,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4(수) 14:00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7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2/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2호 발간 -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27(화) 14:00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박덕흠·변재일·이양수· 정우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27(화) 14:00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심화되는 불평등과 경제위기, 그 속에서의 노점상의 현실과 대안	우상호 의원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